



공단 소송의 유형과 직무상 주의의무의 범위

1. 공단소송유형 1) 최근 6년간 분쟁현황(2013~20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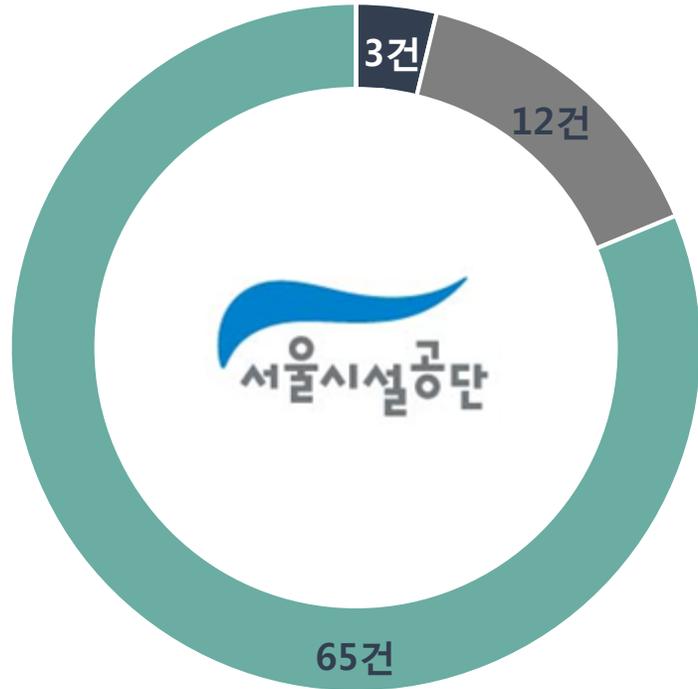
구분	계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사건			
		소계	승소	패소	기타	진행	소계	승소	패소	기타	진행	소계	기소	불기소	진행
총계	198	153	38	4	67	44	13	5	0	5	3	32	10	20	2
2013	12	11	2	0	0	0	1	0	0	0	1	0	0	0	0
2014	18	17	7								0	0	0	0	0
2015	21	15	5	1	6	2	4	4	0	0	0	2	0	2	0
2016	57	44	4								0	11	4	7	0
2017	54	36	18	1	11	6	3	0	0	3	0	15	3	11	1
2018	36	30	2	0	6	22	2	0	0	0	2	4	3	0	1

민, 형사 사건 증가 추세

유어스(現 DDP) 분쟁으로 인한 급증

cf) 연도 : 1심 소 제기일 기준 / 진행사항 : 최종심 결과 반영/ 기타 : 소취하, 조정 등

1. 공단소송유형 2) 분류 : 민사 및 행정 소송 (2016~2018.9)



공단 **원고** 사건(80건)

공단 사업 성격 상 필요한 소송

건물명도/철거
(65건)

- 수익시설(임대사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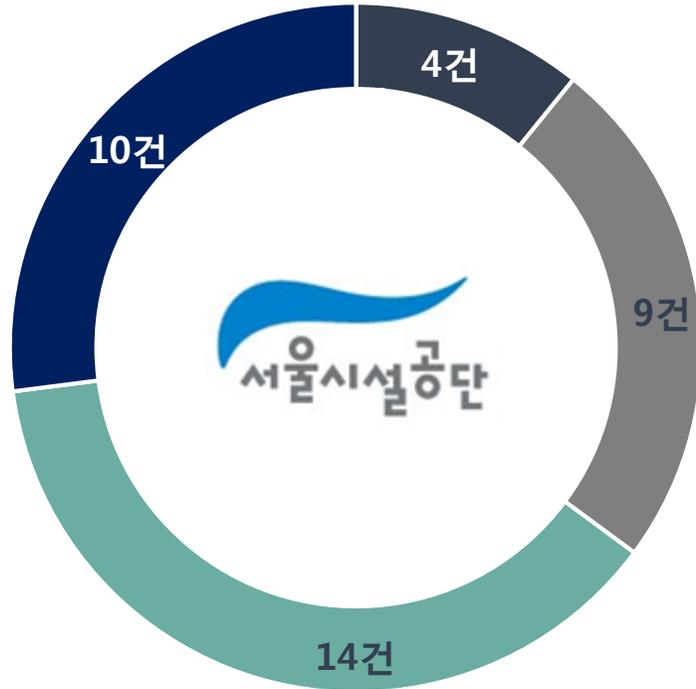
명도관련 금전청구
(12건)

- 수익시설(임대사업) 관련
- 변상금, 부당이득반환, 사용료 등

기타 (3건)

- 손해배상, 추심금, 하자보수

1. 공단소송유형 2) 분류 : 민사 및 행정 소송 (2016~2018.9)



공단 **피고** 사건(37건)

주로 수익시설 관련 발생

수익시설 (14건)

- 임대사업 관련(11건) : 수탁법인과의 협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 등
- 손해배상청구(3건) : 점포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

도로 (9건)

- 구상금 청구(7건) : 도로 상 사고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 손해배상청구(2건) : 도로 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노동 (4건)

- 통상임금 등

기타 (10건)

- 주차장 위탁관리료 관련(2건)
- 입찰(1건 - 낙찰자지위확인 소송)
- 기타(7건)

1. 공단소송유형 3) 분류 : 형사사건 (2016~2018.9)

당사자 구분	결과	건수
공단 고소인 (총 26건)	기소	9
	불기소	16
	진행 중	1
공단 직원 피고소인 (총 4건)	기소	1
	불기소	2
	진행 중	1

- 1 형사 사건은 법인 책임이 아니라, **개인 책임**이 원칙. 공단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조직충성도 및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 필요

 - ☞ 범죄가 개인 비리가 아니라 업무시스템의 문제일 경우 개선 필요
- 2 벌칙 중에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 ☞ 대표자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2. [민사 행정 분야] 직무상 주의의무 1) 계약서

계약서 해석에 관한 판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등).

2. [민사 행정 분야] 직무상 주의의무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근거법령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이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략)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법 ➡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만을 규정

지방계약법 ➡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추가

변상금 부과

입찰시 유의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2. [민사 행정 분야] 직무상 주의의무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인사노무 업무시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청구 가부

징계시 주의의무

징계처분이 무효일 경우
징계위원들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여부

직장내 성추행과 사업주
(회사) 책임

① 마사회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 과잉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남용 등으로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에도 그것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징계의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은 전문적으로 그 징계의 양정을 잘못된 징계위원들에 게 불비하게 행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위원들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당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근로자를 징계한 사업주에 대한 불법 행위책임 인정(서울고법 2018.4.20.선고 2017나2076631 판결)

3. 형사상 각종 벌칙규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부서의 업무상 적용되는 각종 법률의 벌칙 규정

· 조사 받음”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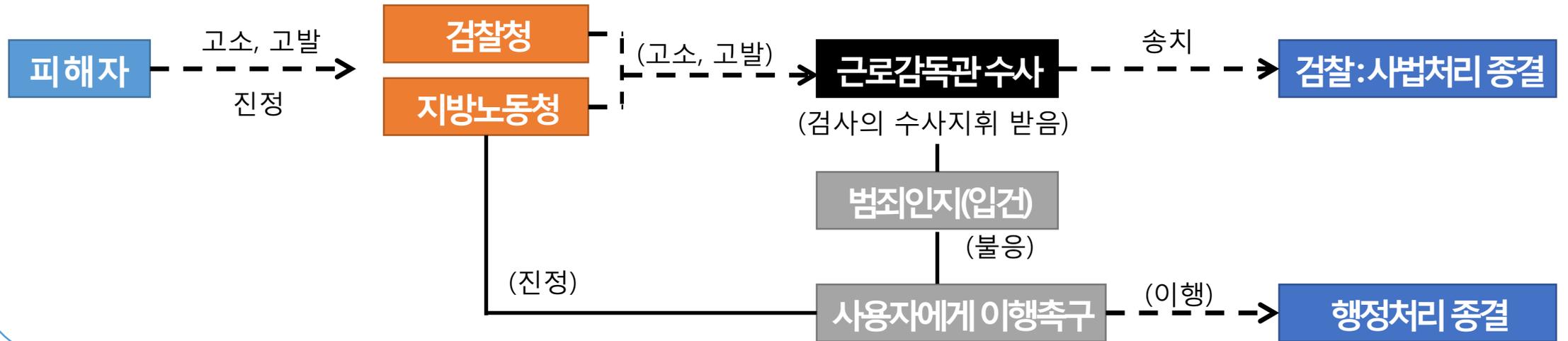
3. 형사상 각종 벌칙규정

노동진정사건

형사 사건 관리 필요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

근로감독관 =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죄에 한해서 사법경찰관리





감사합니다